

瑞山市消費者保護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1. 審 查 經 過

가. 提出日字 : 1999. 4. 9

나. 提出者 : 瑞 山 市 長

다. 回附日字 : 1999. 4. 9

라. 上程日字 : 1999. 4. 14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 地域經濟課長 文哲柱)

가. 提案理由

- 지난 '96. 4. 1일부터 개정시행된 소비자보호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비자보호 조례를 제정토록 의무화하고 있어
 -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관계법에 의거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임.

나. 主要骨子.

-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의무 및 소비자의 권리규정.

-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확립으로 소비자의 기본권익 보호강조
- 건전소비 실천운동과 소비자보호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사항 규정
- 소비자 보호센터의 설치·운영등 규정
- 소비자단체등록 및 보조금지원 규정
-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 설치규정등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 '96. 4.1일자 개정시행된 소비자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면 시·군에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소비자보호 조례를 제정시행토록 규정되었음.
- 그동안 소비자보호와 지방물가안정을 위하여 운영하여 오던 「서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서산시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이는 시기적으로 늦은감이 있으나 적절한 제도라고 볼 수 있으며, 조례안의 내용 및 형식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소비자보호와 지방물가관리가 경제생활에 있어서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그 개념이 상이한 만큼 이를 통합 운영할 경우 운영상 다소의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염려되는바,
 - 건전한 소비생활과 적절한 물가관리를 위하여 세부적이고 치밀한 관련 규칙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질문1) : 시에서 소비자보호단체에 지원한 내역과 사업내역은?

답 변 : 소비자 고발센터에 연간 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간사1인이 상주하여 시민들로부터 연간 600여건의 신고사항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음.

○ 질문2) : 본 조례안에 의거 서산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기 위촉된 서산시물가대책위원회 위원이 승계되도록 규정함에 따라 위원회의 전문성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문제점은 없는지?

답 변 : 기 위촉된 서산시물가대책위원회 위원이 금년 1월에 위촉되었고 위원들도 전문성과 경력등을 고려하여 위촉되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보완토록 하겠음.

5. 討 論 : 없었음.

6. 少數意見 : 없었음.

7. 審査結果 : 원안대로 가결

의안 번호	제 16호
의결년월일	1999. (제 회)

서산시소비자보호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1999. 4. 9 .

서산시소비자보호조례안

의안 번호	56
----------	----

제출년월일 : 1999. 4. 9.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제정사유

- '96. 4. 1부터 개정시행된 소비자보호법 및 같은법시행령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토록 의무화하고 있어 이에따라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코자 함

주요골자

-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의무 및 소비자의 권리 규정 (안 제3조)
-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으로 소비자의 기본권익보호 강조 (안 제7조)
- 건전소비 실천운동과 소비자보호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사항 규정 (안 제4조)
- 소비자보호센터의 설치·운영등을 규정 (안 제9조 및 제11조)
- 소비자단체 등록 및 보조금 지원규정 (안 제16조 및 제17조)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설치 및 기능과 심의위원회구성등 심의사항을 규정 (안 제18조 ~ 제25조)

기타참고사항

- 관련법규
 - 소비자보호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5조 (조례의 제정)
 - 충청남도소비자보호조례

서산시소비자보호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산시 시민(이하 “소비자”라 한다)이 소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그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등)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중 “소비자” 및 “사업자”의 정의는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소비자의 권리와 역할”은 법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소비자의 권리실현) 시장은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1.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 등 각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 유도를 위한 조사, 권고, 공표 등
4. 소비자단체등 건전하고 자주적인 소비자의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5. 소비자 피해구제기구의 설치·운영
6.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시책추진
7. 기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등

제4조(건전소비운동실천) 시장은 소비자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장한다.

1. 사치낭비의 배격과 근검절약
2. 분수에 맞는 소비생활과 저축
3. 기타 건전소비운동실천에 필요한 사항등

제 2 장 소비자권리의 보장

제 1 절 통 칙

제5조(소비관련 정보제공) ①시장은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시책 및 결정사항 등 정보를 제공한다.

②시장은 물품·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고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소비관련 정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보, 생활정보지, 지역유선방송등 홍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제 2 절 위해 및 불공정거래방지

제6조(위해방지의 행정지도) ①시장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②제1항의 행정지도에 사업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를 회수 또는 제조·판매를 중지하도록 도에 보고하거나 한국소

비자보호원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불공정거래의 금지) ①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1.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2. 불공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계약의 이행을 강요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4. 소비자의 계약철회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5.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제1항 각호1의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시장은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8조(계량의 적정화) 시장은 계량실태를 조사하고 계량의 적정화를 위하여 단속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 3 절 소비자피해의 구제

제9조(소비자보호센터 설치) ①시장은 소비자의 불만·피해등 고발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와 같이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한다.

1. 시본청 : 지역경제과
2. 읍·면·동 : 민원실

제10조(소비자보호센터의 기능) 소비자보호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등 고발사항 접수처리
2. 소비자 상담 및 정보제공

3. 소비자가 제시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규격, 품질, 안전성등에 관한 시험 및 검사의뢰 또는 조사

4. 기타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등

제11조(운영) 소비자보호센터에서는 소비자보호 담당자를 전담요원(이하 “전담요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제10조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며 전담요원은 그 처리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소비자 고발사항 처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제12조(피해구제의 신청방법) 소비자는 전화, 팩시밀리, 서신 또는 방문등으로 소비자보호센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피해구제의 처리절차) ① 소비자보호센터는 접수된 소비자피해 구제 신청사항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관련부서를 지정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고 지정받은 부서는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과 소비자보호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사항이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비중을 감안하여 주무처리부서를 지정한다.

③ 읍·면·동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사항은 신속하게 시 소비자보호센터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처리기간) 민원실에서 접수 이송한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이나 소비자보호센터에 직접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은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미비사항의 보완 및 시험·검사·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중간 통보한다.

제15조(시험·검사·조사등) ① 피해구제의 신청당시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요청하거나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받은 처리부서와 읍·면·동 소비자보호센터는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에 관한 시

험·검사 또는 조사를 추가로 요청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시험·검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지정받은 처리부서에서는 사안에 따라 다음의 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1. 한국소비자보호원

2.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3.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

4. 기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시험·검사 또는 조사할 수 있는 기관·단체

④제13조제1항의 통보서에는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 결과를 따로 붙여야 한다.

제 4 절 소비자단체의 지원

제16조(보조금의 지원) ①시장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재정경제원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단체의 건전한 조직활동과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소송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방법등은 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 3 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제1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산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기능) ①위원회는 소비자권익의 향상과 지방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주요시책수립 및 시행
2.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관련기관, 단체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소비자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시장이 결정 또는 관여하는 공공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상·하수도사용료,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공원묘지 사용료, 쓰레기 봉투가격 등
2. 기타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③제2항 각호의 심의대상 요금중 인상후 3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당해 연도 소비자물가 억제목표 미만으로 인상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산업건설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학계·경제계·금융계·소비자단체 임원, 유통단체 대표, 주민대표등 전문지식이 있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

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20조(임기) 위원회의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제24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매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5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18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 문제에 관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관계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4 장 보 칙

제26조(의견청취·검사등) ①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시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서 물품, 시설, 제조공정, 관계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실비변상) ①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서산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시를 위하여 출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지도단속)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지방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지도·점검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1. 소비자 보호 및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연중 수시 운영
2.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지도·단속반원은 소관 분야별 실무자로 구성하여, 필요시 검찰, 경찰 및 세무공무원등을 포함하여 합동 지도·단속 실시
3. 위반자에 대하여는 위해방지, 계량, 표시의 적정화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시정, 경고, 고발등 조치

제29조(공표) ①시장은 소비자권익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1. 시험·검사 및 조사의 내용
2. 사업자의 소비자보호 관계법령 및 조례 위반내용
3. 이 조례에 의한 시정권고의 내용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당사자

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서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기 위촉된 서산시물가대책위원회 위원은 서산시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위원이 되고 서산시물가대책위원회의 협의·조정을 이미 거친 사용료, 수수료, 교통요금등은 이 조례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당시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또는 요청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접수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소비자 고발사항 처리대장

소비자 고발사항 처리대장							담당자	담 당	과 장	결 재
일련 번호		접 수 일 자		접수방법	전화, FAX, 서면, 방 문	접수자				
소 비 자	성 명		남,여	작 업		전 화				
	주 소									
고 발 사 항	고 발 유 형	품질불량, 성능미흡, 허위표시, 안전도불량, 기타			상 품 명		상 표			
	제 조 회사명				대 표 자		전 화 번 호			
	구 입 경 위	방문, 통신, 다단계, 소비자직접구입			구 입 장 소					
	판 매 처				판 매 인		전 화 번 호			
	가 격		대 금 지급방법	일시불 할 부	구입일자		사 건 발생일자			
고 발 내 용	요구사항	반품, 교환, 환불, 수리, 보상, 화해, 시정, 경고, 처벌, 감사의뢰, 기타								
처 리 내 용	처리일자				처리자	직	성명	①		